

감 사 보 고 서

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감사내용 :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(감사), 산학협력단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여자대학교 2023회계연도 산학협력단 회계 및 학교기업 회계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표,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: 광주여자대학교 2023회계연도 산학협력단 회계 및 학교기업 회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표, 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4년 4월 24일

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 민혜정 (인)